

<졸업고사 면제 세부사항>

-졸업고사 면제 해당 학생은 졸업고사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나, **면제신청서는 제출해야 함.**

1) 전공학점 이수기준 충족 후 전공평점평균 4.0 이상일 경우(7학기 이상 이수자)

과정	전공학점 이수기준	전공평점평균
단일전공(전공심화)	60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다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16학번 이하는 45학점 이상 이수 17학번부터는 36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편입	50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외국인유학생	GPA 2.0 이상	

*부전공은 단일전공 기준으로 적용함.

*졸업고사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2) 기준자격증 및 기준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	CPA(1차) AICPA(최종) 세무사(1차) 노무사(1차) 관세사(1차) 자산설계전문가[CEP](1차)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최종)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최종) 생산재고관리사[CPIM](최종) 감정평가사(1차)
-----	---

3) 취업률이 인정되는 (건강보험 가입 등) 기업,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인턴 제외)

면제 증빙서류 종류	취업(인턴X)	1) 재직증명서(입사예정증명서, 합격확인서)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자 구분_직장 가입자
	창업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2) 창업 후 1년동안 총 660만원 이상의 매출 증빙자료 3) 지도교수의 추천서
	자격증	1) 자격증 합격 통지서
	전공과목 GPA	1) 전공 과목 GPA 계산표(직전학기까지의 성적, PF 제외)

※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합격증 제출로 면제 가능